

의안번호	제 487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352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0. 3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공무원 직종개편 후 전환직렬의 상위직급 책정 기반을 마련하고, 다른 시·도 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(안 별표2)

(기준: '16.9.1.)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개정안	1.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현행	1.1% 이내	5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6.4% 이상	0.5% 이내

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9. 23. ~ 2016. 10. 13.)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비 율	1.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-	100%

3. 교육전문직원

구 분	장학관·교육연구관	장학사·교육연구사
비 율	30% 이내	70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 이하
비 율	70% 이내	30% 이상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비 율	11% 이내	5% 이내	23% 이내	34% 이내	34% 이상	0.5% 이내

2~4. (생략)

개정안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

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전문경력관
비 율	15% 이내	8% 이내	31% 이내	40% 이내	19% 이상	0.5% 이내

2~4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3조(정원 책정의 일반기준)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(이하 "단위기관"이라 한다)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·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.
2. 업무의 성질·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3.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.
4.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
2. 본청(직속기관을 포함한다)
3.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)
4. 공립의 각급 학교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 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 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